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고헌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공익제

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